대전광역시 대덕구

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공 보

http://www.daedeok.go.kr

제2019-19호
2019. 3. 13.(수)

선 람	기관(부서)의 장

차 례

입법예고(1)

- 대전광역시 대덕구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공고 제2019-248호) ·····1

공 람									

발행: 대전광역시 대덕구 / 편집: 기획홍보실(우: 34443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오정동) ☎ 608-6602)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고 제2019-248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법제사무 처리 규정」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13일

대 전 광 역 시 대 덕 구 청 장

1.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

2. 제정이유

대덕구와 대전광역시교육청 및 동부교육지원청의 업무협약으로 시행되고 있는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통해 공교육 신뢰 회복 및 학교와 지역사회가 소통하고 협력하는 마을교육공동체를 구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범위를 규정함(안 제4조).

나. 혁신교육지구 사업 추진 시 예산 및 사업내용 등 협의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5조).

다. 혁신교육지구 사업 추진을 위한 전담센터 설치·운영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라. 센터의 운영 및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운영협의회구성 및 기능 등을 규정함(안 제7조부터 안 제13조까지).

마. 교육지원관의 역할 및 보수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7조부터 안 제18조까지).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교육기본법」

나. 예산조치: 예산 필요

다. 비용추계서: 별첨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해당 없음

2) 규제심사: 규제 신설·강화 등 없음

3) 부패영향평가: 소관부서 협의

4) 성별영향분석평가: 소관부서 협의

5) 입법예고: 2019. 3. 13. ~ 4. 2. / 20일 이상

5. 의견제출

가.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9. 4. 1.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참조 : 교육공동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 우 34443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 (오정동, 대덕구청) 대전광역시 대덕구 교육공동체과 (전화 : 042-608-6372, FAX : 042-608-3822, E-mail : minimax@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이메일, 구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6.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교육공동체과 담당자 홍성진 (전화 : 042-608-637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의 혁신과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혁신교육지구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혁신교육지구”란 마을교육공동체 구축을 위하여 학교와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도록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대덕구”라 한다)와 대전광역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대전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이하 “교육지원청”이라 한다.)이 업무협약으로 지정한 대덕구 지역을 말한다.
2. “학교”란 대덕구에 있는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 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3. “교육인프라”란 지역사회에 소재한 환경, 문화, 체험학습 등 인적·물적 자원을 체계적으로 발굴·개발한 교육적 자산을 말한다.
4. “교육지원관”이란 교육 정책·사업 및 제도개선 등 관련 자문, 대덕구와 교육청, 교육지원청, 대덕구민 등의 의견 수렴, 관련 전문가·기관 등과 협업체계 구축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전문가를 말한다.

제3조(교육청·교육지원청·학교와 협력관계 구축)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혁신교육지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교육청·교육지원청 및 학교의 참여를 권장하여야 하며,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과 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에는 교육청·교육지원청 또는 학교와 협의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교육청과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대전광역시 교육감에게 교육청·교육지원청 소속 장학사 또는 일반직, 교사 등의 파견이나 일시적인 협력 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혁신교육지구 사업의 범위)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 공교육 운영 지원
2.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 교육 지원
3. 인적·물적 교육인프라 발굴 및 네트워크 구축 지원
4. 교사,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 운영
5. 학생 맞춤형 진로체험 및 자유학기제·자유학년제 지원 사업
6. 학생자치 관련 지원 사업
7. 혁신교육지구 사업 평가 및 컨설팅
8. 그 밖에 혁신교육지구 사업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혁신교육지구 사업 예산) ① 대덕구와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은 혁신교육지구 사업내용, 사업비 등에 관한 사항을 연도별로 상호 협의

하여 조정·부담하도록 한다.

②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혁신교육지구 사업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혁신교육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혁신교육지원센터(이하 "혁신교육지원센터" 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혁신교육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혁신교육지원센터의 기능) 혁신교육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혁신교육지원센터의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2. 교육지원 및 협력사업의 기초조사, 사업 분석, 평가·연구
3. 교육자원 발굴 및 양성교육지원 사업
4. 교육지원 및 협력 민간네트워크 사업
5. 방과 후 활동 지원 사업
6. 혁신교육 관련 교육 및 홍보
7. 혁신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 운영 및 활성화
8. 그 밖에 혁신교육지구사업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운영협의회의 구성 등) ① 구청장은 혁신교육지원센터의 운영 및 혁신교육지구 사업 추진을 위하여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및 협의회 산하 분과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연직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자치행정국장 및 교육장이 추천하는 교육지원청 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교육지원청 소속 교육공무원 및 관내 학교 교직원
2. 학생, 학부모, 교육관련 시민단체 대표
3. 그 밖에 혁신교육지구 사업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협의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혁신교육지원센터장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혁신교육지구 대상 사업
2. 협의회 조직에 관한 사항
3. 혁신교육지구 사업 방향 및 의제 발굴에 대한 사항
4. 그 밖에 혁신교육지구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위촉 당시 추천 받은 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
4. 위원이 협의회 직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협의회의 직무 수행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그 비밀을 이용하는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3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2회 이내로 하고,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교육자원봉사자의 운영) ① 구청장은 사업별로 필요한 교육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교육자원봉사자에게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21조에 따라 자원봉사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구민참여) 구청장은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구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으며, 학교장, 교사, 학부모, 학생 등을 포함한 지역주민을 상대로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16조(참여자에 대한 실비지원) 구청장은 제15조에 따른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교육지원관)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대덕구 교육지원관(이하 “교육지원관”이라 한다)을 위촉할 수 있다.

1. 교육 정책·사업 및 제도개선 등 관련 자문 및 제안
2. 대덕구와 교육청, 교육지원청, 대덕구민 등 의견 수렴 및 관련 전문가·기관 등과 협업체계 구축
3. 대덕구 마을과 학교의 협력 사업
4. 그 밖에 민·관 협력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교육지원관이 수행하는 교육정책이나 사업 및 업무의 특수성과 역할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자격기준을 별도로 정한다.

제18조(교육지원관의 보수기준) 교육지원관의 보수기준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업무 범위와 역할, 권한, 근무시간, 경력 등과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 「공무원 보수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비 용 추 계 서

1. 의안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 혁신교육 지원사업 추진

나. 관련조문

- 대전광역시 대덕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5조(보조금의 지원)

3. 비용추계 전제 : 계속사업(매년시행)

4. 비용추계 결과(내역)

(단위:천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019년)	2차년도 (2020년)	3차년도 (2021년)	4차년도 (2022년)	5차년도 (2023년)	합계
총비용(a-b)							
세입	소계(a)	315,000	300,000	300,000	300,000	300,000	1,515,000
	국비보조금	235,000					235,000
	시비보조금						
	지 방 세						
	세 외 수 입						
	기타(구비)	80,000	300,000	300,000	300,000	300,000	1,280,000
세출	소계(b)	315,000	300,000	300,000	300,000	300,000	1,515,000
	혁신교육 지원사업	315,000	300,000	300,000	300,000	300,000	1,515,000

※ 혁신교육 지원계획에 따라 비용 변동 가능

5. 비용추계(세출) 산출내역

- 세입 : 지방세(자체수입)
- 세출 : 대덕행복이음혁신교육지구사업 지원 100백만원, 마을교육공동체 운영 등 85백만원, 청소년·학부모 동아리 활동 지원 70백만원, 청소년 예술교육 지원 60백만원

6. 재원조달 방안

가. 재원조달 계획

(단위:천원)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의존재원	소계	315,000	300,000	300,000	300,000	300,000
	국비보조금	235,000				
	시비보조금					
자체수입 (지방세,세외수입 등)		80,000	300,000	300,000	300,000	300,000

나.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 지방세 자체수입 / 구비 100%

7. 부대의견 : 없음

8. 협의사항 :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을 위한 예산 편성 필요

9. 작 성 자 : 교육공동체과장 행정5급 민찬기

관 계 법 령

「교육기본법」

제5조(교육의 자주성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② 학교운영의 자율성은 존중되며, 교직원·학생·학부모 및 지역주민 등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 12. 21.]

제7조(교육재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유아교육법」

제7조(유치원의 구분) 유치원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국립유치원 : 국가가 설립·경영하는 유치원

2. 공립유치원 : 지방자치단체가 설립·경영하는 유치원(설립주체에 따라 시립유치원과 도립유치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3. 사립유치원 : 법인 또는 사인(私人)이 설립·경영하는 유치원

[개정 2010. 3. 24.]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21조(실비지급) 구청장·자원봉사센터 또는 자원봉사수요자는 자원봉사자의 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식비, 교통비, 소모품비)을 지급할 수 있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교육공동체과	
담 당 자 연 락 처	홍 성 진 042-608-6372

대덕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제정안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의　　견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고 (제출일)
		2019.0.0.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